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0호)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

구분	현재	변경 내용	적용일
 모바일 학습	불가능	가능	2023.05. 적용 (예정)
 순차 학습	미적용	순차 학습 적용	2023.05.02(화) 적용 완료
 SKIP(스킵)	가능	기본 스킵 제한, 자동 재생 기능 적용	
 본인 인증	미적용	mOTP, 휴대폰 문자 인증, 아이핀을 통해 본인인증 후 수강이 가능하도록 적용	2023.05.02(화) 적용 완료
 평가 재응시 제한	미적용	최대 2회까지 재응시 가능 단, 2회 재응시 후에도 미수료가 될 경우 90%이상 재학습 시 평가 응시 가능	2024년 1월 중
 수수료 기준	진도율 80%이상, 평가 60점 이상	진도율 90%이상, 평가 70점 이상(학습진도율평가 20%, 학습평가 80%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 내용에 따른 변경사항은 채용시 교육, 정기안전보건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등 모든 근로자안전보건교육에 해당 되게 됩니다. 해당 변경 내용은 5월 2일(화) 에 시작되는 교육 개강 일정부터 적용되며, 해당 일정 이전 시기에 수강을 하고 계신 고객님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